

인천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2253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11. 22. A과 혼인신고를 마친 A의 배우자이다.

나. A은 2021. 11. 9. 인천지방법원 2021하단7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A은 2020. 11. 20. 소외 D와 사이에, A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E 외 3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에게 매매대금 21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D로부터 2020. 12. 18. 위 매매대금 중 46,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 다 (이하 위 송금된 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하고, 위 송금행위를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46,2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채무자인 A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3)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위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은 A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면서 D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46,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내지 12, 2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A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까지 약 36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② A은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금전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A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아파트 관리비 등 가사 지출로 보이는 카드대금 납부와 병원비 등 A과 피고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위 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A의 채무 등 변제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A은 부부로서 A이 증여 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 매매대금 중 46,2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A이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